

도산등사실(인정, 불인정) 통지서

접수번호

신청인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		
	신청일	년	월	일
선박 소유자	성명		생년월일	
	선박명		선종 (총톤수)	[]상선 []어선 []기타 (G/T)
	소재지			

귀하가 제출하신 선박소유자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「선원법 시행령」 제18조의2제1항 및 「선원법 시행규칙」 제39조의2에 따라 (인정, 불인정)되었음을 통지합니다.

※ 상기 사업장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퇴직한 자 중 최종 4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4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는 우리청(제주 해양수산관리단 또는 해양수산사무소)에 확인신청서를 년 월 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(인정된 경우에만 적습니다).

※ 동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,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하시기 바랍니다(불인정된 경우에만 적습니다).

년 월 일

○○지방해양수산청장
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
해양수산사무소장

